

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3. 제안이유

- 각종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기준액을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개정하여 지급함으로써
- 시험위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시험관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가.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

- 5급이상(일당) 30,000원 → 40,000원
- 6급이하(일당) 15,000원 → 20,000원
- 종사원(일당) 6,500원 → 10,000원

나. 문제 편집·편찬수당

- 일 당 7,000원 → 10,000원

다. 문제선정 심의수당

- 과목당 35,000원 → 45,000원

라. 감시수당(일당)

- 평 일 6,500원 → 10,000원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충청북도에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종사자들에게 시험의 규모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지급가능 범위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으로

'97년도부터 실시되는 각종시험에 있어서 시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준액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시험수당 지급 기준중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에 있어서는 5급이상인 30,000원에서 40,000원으로 6급이하가 15,000원에서 20,000원으로 종사원이 6,500원에서 10,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
- 문제편집·편찬수당에 있어서는 7,000원에서 10,000원으로 과목당 문제선정 심의수당은 35,000원에서 45,000원으로 하였고 평일의 감시수당은 6,500원에서 10,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

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시험시행 관련 수당지급 기준액을 현실화에 맞게 조례로
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첨 부

-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(안) 1부